

2025년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사후 환불율 확대

- 응시수수료 접수취소 기간 종료 후 수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환불 신청을 한 경우, 환불율 50%에서 100%로 확대

구분	환불사유	환불요율
1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	100%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서 지정한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4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군인 및 군무원	
5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	

○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 모바일 신분증 발급기관 확대 및 종류 다양화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모바일 공무원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 추가 인정)

○ 간편결제 도입

- 원서접수 시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도입

2.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시험시행일
정기접수	빈자리 접수	
'24. 12. 02.(월) 09:00 ~ 12. 06.(금)18:00	'25. 01. 02.(목) 09:00 ~ 01. 03.(금)18:00	'25. 01. 11.(토)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25. 02. 12.(수)	'25. 02. 12.(수) ~ 03. 04.(화)	'25. 03. 20.(목)

※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참고

※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함

나. 시험 시행지역: 전국 12개 지역

-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다.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번호 1644-8000)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5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815
경남지사 필기시험부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61
울산지사 필기시험부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7	052	220-3211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75
경인지역본부 필기시험부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62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2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99
전북지사 자격시험부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84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5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37

※ 충북지역 및 경북지역 확대시험장 개설 예정

※ 부서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큐넷 홈페이지 공지

3.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 구성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 (8영역)	200	1점 / 1문제	200점	객관식 5지 택1형

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일반수험자

구분	시험과목	세부영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09:00	09:30~10:20 (50분)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10:40	10:50~12:05 (75분)
휴식시간 12:05 ~ 12:25 (2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12:25	12:35~13:50 (75분)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25. 01. 1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연장 수험자

-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시행지부/지사 사정 등에 따라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2배 시간 연장

구분	시험과목	세부영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30 (60분)
휴식시간 10:30 ~ 10:5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10:50	11:00~12:30 (90분)
점심시간 12:30 ~ 13:20 (5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13:20	13:30~15:00 (90분)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 연장

구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45 (75분)
휴식시간 10:45 ~ 11:0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1:05	11:15~13:08 (113분)
점심시간 13:08 ~ 14:00 (52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4:00	14:10~16:03 (113분)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7배 시간 연장

구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55 (85분)
휴식시간 10:55 ~ 11:1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1:15	11:25~13:33 (128분)
점심시간 13:33 ~ 14:25 (52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4:25	14:35~16:43 (128분)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 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격자 결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학점인정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등록 완료된 학점까지만 인정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5년 0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3)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
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
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
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
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정기 접수: 2024. 12. 02.(월) 09:00 ~ 12. 06.(금) 18:00 【5일간】

○ 빈자리 접수: 2025. 01. 02.(목) 09:00 ~ 01. 03.(금) 18:00 【2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나.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 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시험 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라.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25,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쿠팡계좌이체, 간편결제) 중 택1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구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p>*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큐넷 사회복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welfare/) “마이페이지” 에서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외)조 부모·형제·자매·자녀)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서 지정한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p>☞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에서 신청</p>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자는 시험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아.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2페이지 기관목록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					
장애 유형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지체 장애	(1) 상지 중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2) 상지 경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3) 하지 (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 단,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정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4)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1) 또는 (2)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3)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해당 없음	
청각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①,②,③호 중 하나
산업·상장 정류유류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 군 과민성방광증후 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④,⑤호 중 하나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 의사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을 참조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사회복지사1급 시험 지적장애인 편의제공 사항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지적장애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7.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결격사유 조회]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사전 안내제도 운영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수험자의 원서 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 안내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s://www.welfare.net/lic>)
- 안내대상: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 시에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 예정이 취소됨**
- 사전안내기간
 - 시험 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 [’24. 10. 11.(금) 09:00 ~ ’25. 01. 10.(금) 18:00]
-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welfare.net/lic>)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다. 응시자격 서류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s://www.welfare.net/lic>)
- 주 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 전화번호: 02)786-0845
- 접수기간: 2025. 02. 12.(수) 09:00 ~ 03. 04.(화)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 2025. 03. 04.(화)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 2025. 03. 04.(화), 18시 까지 방문

마. 응시자격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1)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을 절대로 동봉하지 않을 것
 - ※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 불가
-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응시자격심사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표기 요망
- 제출서류의 도착 확인에 대해 전화 문의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우체국 홈페이지 등기조회를 이용해주시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을 통한 서류접수 확인은 비정기적으로 수시 업데이트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 서류도착 여부에 대한 일대일 대응 시 전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 전화로는 답변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자격 서류 접수일 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자의 경우 아래 서류 제출 불필요
 - ① 성적증명서,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 - '나의 자격정보'에서 본인 자격번호 확인 가능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 <개정 2019. 8. 12.>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 ※ (동일교과목 심의결과 반영 범위 안내) 시험 시행 연도 이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동일 교과목 심의 신청 접수된 과목에 한하여 동일교과목 심의 결과 반영
 - ※ 동일교과목 심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비교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 내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2) 서식 다운로드 주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자료실 → 2025년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로드)
 - ※ 해당 양식의 인정불가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증명서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공지사항 → 2025년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첨부 파일 [서식 3]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양식
 -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직종으로 근무한 경력 등

바.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각 1부 제출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 신고증' 추가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성명과 동일 필수)

1.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 취득자

심사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

2. 최종학력_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2-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p>※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p>

3. 최종학력_4년제 대학교 졸업자 (학사학위 취득자) (전공 무관)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3-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p>※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p>
3-2.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p>※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p>
3-3. 대학교 졸업 후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편)입학 한 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p>※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p>

<p>3-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전문대학에서 과목 이수한 자)</p>	<p>2급 자격 미취득자</p>	<p>2급 자격 취득자</p>
<p>3-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교에서 과목 이수한 자)</p>	<p>2급 자격 미취득자</p>	<p>2급 자격 취득자</p>
<p>3-6.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력)를 취득한 자</p>	<p>2급 자격 미취득자</p>	<p>2급 자격 취득자</p>
<p>3-7. 외국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p>	<p>2급 자격 미취득자</p>	<p>2급 자격 취득자</p>
<p>▪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p>	<p>▪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p>	<p>▪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p>
<p>▪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p>	<p>▪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p>	<p>▪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p>
<p>▪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p>	<p>▪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p>	<p>▪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p>
<p>▪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p>	<p>▪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p>	<p>▪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p>

4.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심사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폐업기관(시설) 종사자의 경우 폐업 전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상근직 근무확인에 필요한 서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30%;">시설인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td> </tr> <tr> <td>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 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td> </tr> </table> 	시설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 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시설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 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5.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심사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기관(시설) 종사자의 경우 폐업 전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상근직 근무확인에 필요한 서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30%;">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td> </tr> <tr> <td>법인·비영리단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td> </tr> </table>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법인·비영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법인·비영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6. 외국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

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보류자 개별 통지

- 통지기간: 2025. 02. 12.(수) 부터
- 통지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286-0845)에서 개별 통지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상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오니 **연락가능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 ※ 부정확한 연락처 기재로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 지역번호(02) 또는 협회 연락처 수신거부로 연락 불가능한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아. 결격사유 조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심사 시 조회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했음지라도,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8.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 기간: 2025. 01. 11.(토) 17:00 ~ 01. 17.(금) 18:00 [7일간]
- 방법: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같음

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시: 2025. 02. 12.(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ARS발표: 1666-0100(4일간)
 -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이 경우, 서류심사 부적격자로서 무효 처리되므로 기한 내 제출 요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2025. 03. 20.(목) 09:00
- 발표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60일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수험번호 게재)

9. 자격증 발급

가. 자격증 발급대상: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나. 자격증 발급자 명의 및 발급기관

- 발급자 명의: 보건복지부장관
- 발급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 자격증 발급방법 등

- 발급방법, 발급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 최종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자격증 발급 가능
 - ※ 자격증 발급 일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아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다음 부여 됨(응시자격서류제출 시 진행되는 심사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심사이고,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 신청한 다음 진행되는 심사는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임)
 - ※ 허위실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목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라. 발급관련 기타 안내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

10. 수험자 유의사항

【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 (모바일신분증) ① 정부24·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모바일 공무원증, ④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및 정부24, 카카오,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 확인 서비스, 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실물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서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컬러)된 재학증명서(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⑥ 서울시교육청 하이잡하이유 앱에 발급된 스마트학생증(서울 소재 특성화고 한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 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객관식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 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 (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 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www.Q-Net.or.kr/site/welfare)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사항

○ 응시편의제공 대상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시행기관에 제출하여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응시편의 차등 적용 제공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응시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단, 응시편의 요청사항 변경은 **시험시행 약 2주 전(2024. 12. 27. 18:00 도착분에 한함)**까지 '장애인 수험자 편의사항 변경요청서' (큐넷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를 우편으로 공단에 제출 시 장애등급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 응시편의 요청 사항 변경 가능(www.Q-Net.or.kr/site/welfare/)의 공지사항 참조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ARS 1644-8000으로 문의 또는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를 참조

○ 응시자격서류심사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Tel. 02-786-0845)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2017.05.23.개정>

실습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small>※'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small>	
	전화번호		휴대전화		
	학교/학과명		실습지도교수 성명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관등록번호		
	주소	<small>※'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small>		전화번호	
	실습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습시간	총 시간 (1일 평균 시간)			
	실습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제 - 호 (. . .)	
	실습지도자 경력기간		기관명	직위	직종(직책)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실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실습기관: (직 인)

년 월 일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등록번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에 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은 세 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예시는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lic>)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 ①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③ **실습시간:**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실습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관실습 실시기관 및 지도자 인적사항	실시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기관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습 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제 - 호 (. . .)
	실습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습 시간	총 시간 (1일 평균 시간)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직 인)				
교육기관 및 실습세미나	학교명		학과명	
	세미나 교수명			
	세미나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세미나 횟수	총 회	실습세미나 시간	총 시간
	오프라인 세미나	총 회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총 회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수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세미나교수: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직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실습지도자, 기관실습실시기관, 실습세미나교수, 학과장의 서명 또는 직인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서식 2-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				
실습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small>※'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small>
	전화번호		휴대전화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주소	<small>※'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small>		전화번호
	기관실습 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제 - 호 (. . .)
	실습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습시간	총 시간 (1일 평균 시간)		
위와 같이 기관실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실 습 기 관: (직 인)				
간접실습	학교명		간접실습 지도교수	
	학과명		간접실습 실시시간	총 시간
	간접실습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와 같이 간접실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은 세 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간접실습 해당자]

실습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관실습 실시기관 및 지도자 인적사항	실시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기관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습 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제 - 호 (. . .)
	실습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습 시간	총 시간 (1일 평균 시간)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직 인)

교육기관 및 실습세미나	학교명		학과명	
	간접실습 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간접실습 실시시간	총 시간
	간접실습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세미나 교수명			
	세미나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세미나 횟수	총 회	실습세미나 시간	총 시간
오프라인 세미나	총 회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총 회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간접실습과 실습세미나를 수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세미나교수: (서명 또는 인)

학 과 장: (직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실습지도자, 기관실습실시기관, 실습세미나교수, 학과장의 서명 또는 직인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상기인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 다 음 -

근무부서	직종	담당업무	경력기간	확인자
			~ (년 개월)	(인)
			~ (년 개월)	
			~ (년 개월)	

- ※ 근무부서 및 직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확인자는 **경력 기재란을 확인하고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총 근무시간으로 표기(1일 8시간 기준, 1년 2,080시간)
- ※ 이직으로 인한 2곳 이상의 기관의 경력합산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서 개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년 월 일

시설명 : (직인)

시설 대표자		시설 연락처	
시설등록번호		등록일	
시설 소재지			

- ※ 사회복지시설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행정기관 고유번호 등 정보를 기재합니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해당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2025년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5년도 제23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의함

서류제출 대상자	○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합격예정자 발표일	○ 2025. 02. 12.(수) 09:00
응시자격 서류 접수기간	○ 2025. 02. 12.(수) ~ 03. 04.(화) ※ 접수시간 :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 2025. 03. 04.(화)까지 유효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반드시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제출서류’ 문구표기 ○ 방문접수: 2025. 03. 04.(화), 18:00까지 방문 ○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9:00~18:00)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 벤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div>
서류접수 확인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lic) → 공지사항 → ‘2025년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도착분’ 게시글 참고 ※ 서류심사결과에 대한 안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은 원본으로 인정함.
- 응시자격 서류접수일 기준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아래 서류 미제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만 제출함
- 응시자격서류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 할 경우 반환 불가**
※ 사진 및 서류심사비 불필요

제출서류 종류 - 공고문에 안내된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를 제출해야함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必) - ‘2025년도 제23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시험 공고’ 및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